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6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8.
3.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이 지역의 실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해당 조문은 2015년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된 것임.

예방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심의함. 예방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① 학부모 대표, ②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음¹⁾.

1) 학교안전법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에 따라 현재 예방위원회는 ① 학부모 대표 1인, ② 교원단체 추천 2인, ③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3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인과, 법률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학교·교육청·도로교통공단·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추천한 8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방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근거 규정
당연직(7)	-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국장급	제4호
위촉직(14)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위원장, 학교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환경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학교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호산대학교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제3호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	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	부회장	제3호
	○○○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	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	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울산교육청 개운초등학교	교장	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제2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제2호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제3호
	○○○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처장	도로교통공단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추천 (학교안전업무관련)
	○○○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사무총장	제1호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예방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에 교육감 협의체(현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양상과 여건이 상이한 지역별 현실을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예방대책 및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대응 경험과 축적된 사례를 중앙 위원회 논의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신속·면밀한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재 교육청의 학교안전과 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교육감협의체 추천 인사는 통상 시·도교육청의 실·국장 또는 외부 기관장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실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하위규범 등에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정함에 있어 학교안전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감 협의체의 추천에 이견이 없고, 학부모, 교원단체, 비영리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외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역교육 현장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차기 위원회 구성 시 교육감 협의체의 단순 추천이 아닌 학교 안전 전문성 및 실무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